학사 규정		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	
표준번호	학칙・학사 학사운영팀 02	제정일	1979. 3. 1.
개정차수	125차	최근 개정일자	2022. 11. 14.

제68조의7(K-MOOC 특별학점 인정)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-MOOC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단, 교내 사이버 강좌(교과목)로 개설된 K-MOOC 강좌는 제외한다.

② K-MOOC 특별학점의 성적은 P(Pass)로 표기,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며 수강 신청 상한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③ 학점인정은 강좌당 1학점, 재학 기간 중 최대 3학점 이내로 한다.

④ K-MOOC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